

「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안)

*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Y

현행	개정(안)	비 고
<p>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p> <p>제 1 장 총칙</p> <p>제 1 조 <생략></p> <p>제 2 조 (용어의 범위)</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은행"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및 <u>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u></p> <p>2~3. <생략></p> <p>4. "이용자(이용기관)"라 함은 <u>"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와 전자서명 검증정보의 합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u></p> <p>5~9. <생략></p> <p><신설></p>	<p>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p> <p>제 1 장 총칙</p> <p>제 1 조 <좌동></p> <p>제 2 조 (용어의 범위)</p> <p>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p>1.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은행"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 및 <u>본인확인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u></p> <p>2~3. <좌동></p> <p>4. "이용자(이용기관)"라 함은 <u>가입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u></p> <p>5~9. <좌동></p> <p>10. <u>"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u></p>	<p>- 인증서 서비스에 본인확인서비스 추가</p> <p>-고객앞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p> <p>-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용어 정의 추가</p>

현행	개정(안)	비 고
	<p><u>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제1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합니다.</u></p> <p>11. <u>“하나 본인확인서비스”(이하 “본인확인서비스”라 합니다)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가입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u></p> <p>12. <u>“본인확인정보”라 함은 가입자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은행이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입자로부터 입력 받는 정보를 말합니다.</u></p> <p>13. <u>“공유비밀정보”라 함은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가입자에 대해 동일한 중복가입확인정보와 연계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공유하는 정보를 말합니다.</u></p> <p>14. <u>“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 CI) ”라 함은 이용자(이용기관)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기관간 공유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u></p> <p>15. <u>“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 DI)”라 함은 이용자(이용기관)의 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로서</u></p>	<p>-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용어 정의 추가</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② <생략></p> <p>제 3 조 <생략></p> <p>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p> <p>①~② <생략></p> <p>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가입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p><u>본인확인기관이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해당 서비스 사이트 식별번호 및 본인확인기관간 공유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생성한 정보를 말합니다.</u></p> <p><u>16. “대체수단”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서 및 연계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말합니다.</u></p> <p>② <좌동></p> <p>제 3 조 <좌동></p> <p>제 4 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제한)</p> <p>①~② <좌동></p> <p>③ 은행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승낙 이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의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를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e-mail, 유선통화, LMS/SMS 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으로 은행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운 경우 2. 가입신청자가 신청 당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 3. 가입신청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비 고
<p>경우, 가입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p> <p>⑧ <u>기타 자세한 이용방법은 '인증업무준칙 4.인증서 관리'를 따릅니다.</u></p> <p>제 8 조~제 9 조 <생략></p> <p><장 신설></p>	<p>변경되는 경우, 가입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기존의 인증서는 자동 폐기됩니다.</p> <p>⑧ <u>기타 인증서 이용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업무준칙 4.인증서 관리'를 따르며,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은 제 10 조를 따릅니다.</u></p> <p>제 8 조~제 9 조 <좌동></p> <p><제 3 장 본인확인서비스></p> <p><u>제 10 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u></p> <p>① <u>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가입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가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입니다.</u></p> <p>② <u>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입자는 이용자(이용기관)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u></p> <p>③ <u>은행은 이용자(이용기관)와 본인확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이용자(이용기관)의 서비스 이용약관, 은행의 약관 및</u></p>	<p>- 본인확인서비스 추가 - 용어의 명확화</p> <p>- 본인확인서비스 장 신설</p>

현행	개정(안)	비 고
	<p><u>정책 등에 따라 가입자가 이용자(이용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u></p> <p>④ <u>가입자는 은행 및 이용자(이용기관)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u></p> <p>⑤ <u>은행은 본인확인이 완료된 가입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를 해당 이용자(이용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이용자(이용기관)이 가입자와 체결한 계약 등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u></p> <p>제 11 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p> <p>① <u>은행은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이용자(이용기관)에게 제공합니다.</u></p> <p>② <u>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경우, 가입자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신청 시마다 안전한 방식으로 연결된 통신망을 통하여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게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요청하고,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이 생성한 값을 수신받아 제공합니다.</u></p> <p>③ <u>가입자의 연계정보 및 중복가입확인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생성 주체인 해당 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은 해당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u></p>	<p>- 본인확인서비스 장 신설</p>

현행	개정(안)	비 고
<p>제 3 장 이용 제한 및 해지</p> <p>제 10 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기)</p> <p><생략></p>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었거나 그렇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가입자가 1년 동안 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5.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6.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7. 하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8.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하나은행이 인지한 경우 <p><항 추가></p>	<p>제 4 장 이용 제한 및 해지</p> <p>제 12 조 (서비스 이용제한 및 인증서 폐기)</p> <p><좌동></p> <p>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2. 가입자가 1년 동안 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서 간편비밀번호를 5회 연속 잘못 입력하는 경우 4.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5. 가입자의 신원확인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6.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7.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 대체수단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은행이 인지한 경우 <p>③ 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입자가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2. 가입자의 모바일 디바이스 및 전자서명생성정보, 대체수단이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p>- 사망 등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폐기해야하는 경우 용어를 명확히 표현 필요</p> <p>- 폐기의 경우와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함</p> <p>- 대체수단, 모바일디바이스 포함</p> <p>- 폐기의 경우와 폐기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함</p> <p>- 대체수단, 모바일디바이스 포함</p>

현행	개정(안)	비 고
<p>③ 은행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통지합니다.</p> <p>제 11 조 <생략></p> <p>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p> <p>제 12 조 <생략></p> <p>제 13 조 (가입자의 의무)</p> <p>①~④ <생략></p> <p><신설></p>	<p>3. <u>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u></p> <p>4. <u>가입자의 개인정보(휴대폰정보, 성명, 생년월일)가 변경된 경우</u></p> <p>④ 은행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해당되어 "<u>하나 OneSign 인증서 서비스</u>" 이용이 제한되거나 인증서가 폐기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사전 통지하며, 불가피하게 사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이를 사후 통지합니다.</p> <p>제 13 조 <좌동></p> <p>제 5 장 계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p> <p>제 14 조 <좌동></p> <p>제 15 조 (가입자의 의무)</p> <p>①~④ <좌동></p> <p>⑤ <u>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대여,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u></p> <p>⑥ <u>가입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대체수단을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u></p>	<p>- 통지 조건을 명확하게 표기</p> <p>-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내용 추가</p>

현행	개정(안)	비 고
<p>제 14 조 <생략></p> <p>제 5 장 손해배상 등</p> <p>제 15 조(사고·장애시의 처리)</p> <p>① 가입자는 <u>모바일 디바이스 및 인증서의 인증수단(간편비밀번호, 바이오인증 등)의</u>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거래 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p> <p>② <생략></p> <p>제 16 조 <생략></p> <p>제 17 조 (정보의 제공)</p>	<p>⑦ <u>가입자는 대체수단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변경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은행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가입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해당 대체수단을 폐기하여야 합니다.</u></p> <p>제 16 조 <좌동></p> <p>제 6 장 손해배상 등</p> <p>제 17 조(사고·장애시의 처리)</p> <p>① 가입자는 <u>모바일 디바이스, 전자서명생성정보, 대체수단의</u>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거래 절차 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p> <p>② <좌동></p> <p>제 18 조 <좌동></p> <p>제 19 조 (정보의 제공)</p>	<p>- 용어의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 고
<p>은행은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자에게 전자적장치(PUSH, SMS, MMS, 전자우편 등)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제 18 조 <생략></p> <p>제 19 조 (약관 외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전자서명법’ 및 ‘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u></p> <p><부칙> <u>이 약관은 2022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합니다.</u></p>	<p>① 은행은 “하나OneSign 인증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을 가입자에게 전자적장치(PUSH, SMS, MMS, 전자우편 등)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p> <p>② 은행은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시 가입자가 사용한 대체수단과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이용자(이용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의 신원, 권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p> <p>제 20 조 <좌동></p> <p>제 21 조 (약관 외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u>‘전자서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인증업무준칙’,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준용합니다.</u></p> <p><부칙> <u>이 약관은 2022 년 4 월 20 일부터 제정 시행합니다.</u> <u>이 약관은 2023 년 3 월 28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 가입자 포함하여 적용됩니다.</u></p>	<p>-정보의제공 수단 등 추가</p> <p>-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명기</p> <p>- 개정 시행일 표기</p>